## (연말정산 도움자료) 주요 공제 항목별 계산사례

	< 주요 공제 항목별 계산사례 요약 >									
0	<ul> <li>□ 주요 내용</li> <li>○ 세법이 개정되거나 계산방식이 복잡하여 상담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공제 항목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요약 설명 하고 항목별로 다양한 계산 사례를 제공</li> <li>□ 주요 항목</li> </ul>									
	(건수)									
	* - U 인적 신용카드 자녀 연금계좌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월세액		
	합계 비과세 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세액공제	
	<b>30</b> 4 3 2 3 2 2 7 1 3 3									3

- ① (비과세 근로소득) 비과세 근로소득을 요약 설명하고 비과세 대상 금액 계산 과정과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급여 계산 사례
- ② (인적공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요건을 표 형식으로 제공하고, 소득 발생 사례별 기본공제 대상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
- ③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복잡한 소득공제 계산방법을 사용금액·결제수단별 다양한 계산사례를 제시하여 설명
- ④ (자녀세액공제) 자녀 수에 따른 기본공제대상 자녀와 출산· 입양 공제대상 자녀별 공제금액 사례
- ⑤ (연금계좌세액공제) 총급여 구간별 공제한도가 단순화 되었고, 나이요건이 삭제되어 2가지 유형에 대해서만 공제금액 산정 방법 설명
- ⑥ (특별세액공제) ② 보험료, ④ 의료비(산후조리원 비용, 실손보험금 수령액 포함사례), ④ 교육비, ④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한 계산방법 설명
- ⑦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별·임차주택별 세액공제 대상금액 산정

#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별 계산 사례

2024. 1.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 순 서

1. 비과세 근로소득 1
2. 인적공제(기본공제와 추가공제) 3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5
4. 자녀 세액공제 8
5. 연금계좌 세액공제9
6. 특별 세액공제 11
6. 특별 세액공제       11         ① 보험료 세액공제       11
① 보험료 세액공제
1 보험료 세액공제       11         2 의료비 세액공제       12

## 1. 비과세 근로소득

- □ 근로소득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 사회정책적 입장이나 과세기술상 필요에 의하여 **과세대상** 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의미
  - 실비변상적 급여(월 20만 원 이내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등)
  - 국외근로소득 (월 100만 원 또는 300만 원 이내)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연 240만 원 이내)
  - 현물식사 또는 월 20만 원 이하 식사대
  -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 원 이내)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
  - 연 500만 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

사례 1 매월 급식수당으로 25만 원을 지급받는 경우 월 비과세되는 금액은?

- ◇ 회사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식사대로 매월 25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20만 원은 비과세하고 나머지 5만원은 과세
- ☞ 위 근로자의 **월 비과세되는 금액**은 20만 원 입니다.

사례 2 두 회사를 다니면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A회사 30만 원, B회사 15만 원을 받은 경우 비과세되는 금액은?

- ◇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서 비과세 적용
- ☞ 위 근로자의 비과세되는 금액은 35만 원 입니다.(A회사 20만원, B회사 15만 원)

사례 3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의 월급여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국외근로소득 비과세금액은?

1월 ~ 3월 : 월 270만 원, 4월 ~ 6월 : 월 350만 원 7월 ~ 9월 : 월 390만 원. 10월 ~ 12월 : 월 240만 원

- ◇ 월 300만원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며 300만 원에 미달하는 금액은 이월적용하지 않음
- ♦ (1월~3월:270만 원×3) + (4월~9월:300만 원×6) + (10월~12월:240만 원×3)
- ☞ 위 근로자의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은 3,330만 원 입니다.

생산직근로자의 12월 급여가 다음과 같은 경우 월정액급여 및 비과세금액은? (1~11월까지 생산직근로자로서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금액 200만 원을 공제 받음)

#### 사례 4

- ① 기본급 140만 원
- ⑤ 야간근로수당 10만 원
- ② 가족수당(매월 지급) 6만 원 ⑥ 휴일근로수당 5만 원
- ③ 부정기적 상여 100만 원
- ⑦ 식대(현물식시를 제공받지 않음) 23만 원
- ④ 연장근로수당 10만 원
- ☞ 비과세 금액:45만 원

※ ④ 연장근로수당 10만 원, ⑤ 이긴근로수당 10만 원, ⑥ 휴일근로수당 5만 원, ⑦ 식대 20만 원

☞ 월정액급여: 169만 원

<월정액급여 계산>

- ☞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를 차감한 급여의 총액 : 194만 원
  - \* ① ~ ⑦ 총 합계액 294만 원 100만 원(③ 상여) = 194만 원
- \*\* ⑦ 식대(23만 원)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 급여 계산 시 포함됨
- ◆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 25만 원
   월정액급여 = 부정기적 급여를 차감한 급여의 총액 야간근로수당 등
   = 194만 원 25만 원 = 169만 원
- ☞ 위 근로자의 **12월 비과세 금액**은 **45만 원** 이고 **월정액 급여는 169만 원** 입니다.
- ※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
-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 요건과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3천만 원 이하 요건을 동시에 충족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대상 급여 기준 적용방법>

월정액급여 = 급여의 총액 - 야간근로 수당 등

- ① 급여의 총액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합계액(다만,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인 급여 제외)
- ② 비과세되는 식사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월정액급여 계산시 차감하지 않도록 주의
- ③ 상여금을 매월 급여항목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정액급여 계산시 차감하지 아니함 ※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2개월에 한번씩 지급받는 상여금은 부정기적인 급여에 해당
- ④ 야간근로수당 등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급여총액에 포함
- ⑤ 임금협상 결과 1월분부터 소급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급여와 인상 금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월정액급여의 계산은 1월분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산

## 2. 인적공제(기본공제와 추가공제)

- □ 근로자의 부양가족 상황에 따라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고
- 거주자 본인, 거주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 중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에 대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두종류**가 있음
  - 기본공제: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

<기본공제 요건>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63.12.31.이전)	20세 이하 ('03.1.1.이후)	20세 이하 60세 이상	해당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	제한없음

-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요건>

요건	경로우대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부양/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 원	2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중복시 한부모 공제 적용)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3명(만 20세 자녀 1명과 20세 이만 자녀 2명), 60세 이상 직계존속 2명이 있으며, 근로자 본인 외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은?

- ◇ 공제대상 가족수 : 본인, 배우자, 자녀 3명, 직계존속 2명
- ☞ 위 근로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1,050만 원** 입니다. [본인 포함 공제대상가족(7명) × 150만 원 ※ 해당 과세기간 중에 만 20세에 도달하더라도 기본공제 가능

사례 2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소득이 없는 아버지가 60세 미만이고 장애인인 경우 아버지에 대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금액은?

- ◇ 장애인은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만 충족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기본공제와 장애인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 위 근로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150만 원, 추가공제 금액**은 **200만 원** 입니다.

# 근로자의 부양가족별 소득금액이 다음과 같을 때 기본공제대상자 수는 ? · 본인 총급여액 5,000만 원 · 배우자 총급여액 500만 원

#### 사례 3

- · 만 20세 장녀 사업소득금액 110만 원
- · 만 18세 장남 이자수입 100만 원
- · 만 60세 부친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500만 원
- ◇ 기본공제대상자 본인, 배우자, 만 18세 장남, 만 60세 부친
- ☞ 위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는 4명입니다. [본인 포함 공제대상기족(4명)×150만 원]
  - \* 수입금액 10억 이하인 작물재배업은 비과세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비목)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100만 원 요건 초과 사례

<ul> <li>□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비과세 제외) 5백만원,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제외) 3,333,334원 초과 부양기족은 기본공제 불가능</li> <li>○ 총급여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li> </ul>
<ul><li>□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li><li>○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li></ul>
□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기족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기본공제 불기능 ○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 소득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받을 수 있음(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6,666원(연금소득 금액 100만원)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ㆍ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원 초과(종합소득 합산과세 선택)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ul> <li>□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li> <li>※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음(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li> </ul>
□ (양도소득)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100만원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ul> <li>□ (퇴직소득)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li> <li>○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li> <li>※ 공적연금 관련법(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에 해당함</li> </ul>

##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사용처별·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 제 율
◇ 신용카드	15%
◇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 도서·공연·영화·박물관·미술관	30%
('23.4.1. ~ 12.31. 대중교통 사용분)	(4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	
◇ 전통시장 사용분	40%
('23.4.1. ~ 12.31. 전통시장 사용분)	(50%)
◇ 대중교통 사용분	80%

- ※ 영화관람료는 2023.7.1.이후 사용분부터 공제가능
- □ 공제한도 및 최저 사용금액
  - (공제한도) 급여수준별 공제한도 중 적은금액

구 분	공 제 한 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	300만원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	250만원

○ (추가 공제한도) 아래 항목별로 각 100만 원 한도 추가

항 목	추가공제한도			
8 =	7천만원 이하자	7천만원 초과자		
전통시장		200만원		
대중교통	300만원			
도서·공연·영화·박물관·미술관				

- **(최저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최저사용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공제비율을 곱하여 공제금액을 계산

# 사례 1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의 25%) 이상

- ◇ 총급여 68백만 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은?
  - ▷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소득공제 추가분 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00만 원입니다.
-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자동계산 됩니다.

#### [2023년 신용카드 등 사용 현황]

구 분	사 용 액
신용카드	2,500만원 (대중교통 300만원 포함)
현금영수증	1,300만원 (전통시장 400만원* 포함)
체크카드	800만원 (도서공연 200만원** 포함)
총 계	4,600만원

- 1) 전통시장 사용액 중 '23년 1월~3월 사용금액은 120만원, 4월~12월 사용금액은 280만원
- 2) 도서·공연 사용액 중 '23년 1월~3월 사용금액은 50만원, 4월~12월 사용금액은 150만원

#### [소득공제금액 계산]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4,600만원으로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의 25%)= 6,800만 원 × 25% = 1,7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소득공제 가능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600만 원 (1+2)
  - 1. 기본공제 금액
    - : ① + ② + ③ + ④ + ⑤ ⑥ = 1,028만원(한도 300만원)
    - ① 전통시장 사용분 = (120만원 × 40%) + (280만원 × 50%) = **188만원**
    - ② 대중교통 사용분 = 300만원 × 80% = 240만원
    - ③ 도서·공연 등 사용분 = (50만원 × 30%) + (150만원 × 40%) = 75만원
    - ④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등 사용분(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 제외) = (1.300만원-400만원) × 30% + (800만원-200만원) × 30% = **450만원**
    - ⑤ 신용카드사용분 = (2.500만원-300만원) × 15% = **330만원**
    - ⑥ 최저사용금액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금액(신용카드 사용금액 ≥ 최저사용금액 인 경우)= 최저사용금액(1,700만원) × 15% = 255만원
  - 2. 추가한도 적용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 300만 원\*
    - \* Min{한도초과액(1,028만 원 300만 원), (188만원 + 240만원 + 75만원), 300만원} = **300만원**
    -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추가공제 한도 300만원 적용

#### 사례 2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의 25%) 이상

- ◇ 총급여 9천만 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은?
  - ▷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소득공제 추가분 15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50만 원입니다.
-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자동계산 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 현황]

구 분	사 용 액
신용카드	3,100만원 (대중교통 200만원 포함)
현금영수증	1,800만원 (전통시장 350만원 <sup>1)</sup> ) 포함)
체크카드	900만원 (도서공연 270만원 <sup>2)</sup> ) 포함)
총 계	5,800만원

- 1) 전통시장 사용액 중 '23년 1월~3월 사용금액은 90만원, 4월~12월 사용금액은 260만원
- 2) 도서·공연 사용액 중 '23년 1월~3월 사용금액은 70만원, 4월~12월 사용금액은 200만원

#### [소득공제금액 계산]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5,800만원으로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의 25%)= 9,000만 원 × 25% = 2,250만 원을 초과하므로 소득공제 가능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450만 원 (1+2)
  - 1. 기본공제 금액
    - : ① + ② + ③ + ④ ⑤ = 1,212.5만원(한도 250만원)
    - ① 전통시장 사용분 = (90만원 × 40%) + (260만원 × 50%) = **166만원**
    - ② 대중교통 사용분 = 200만원 × 80% = **160만원**
    - ③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등 사용분(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 제외) = (1,800만원-350만원) × 30% + (1,450만원-270만원) × 30% = **789만원**
    - ④ 신용카드사용분 = (3.100만원-200만원) × 15% = **435만원**
    - ⑤ 최저사용금액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금액(신용카드 사용금액 ≥ 최저사용금액 인 경우) = 최저사용금액(2,250만원) × 15% = **337.5만원**
  - 2. 추가한도 적용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 200만 원\*
    - \* Min{한도초과액(1,212.5만 원 300만 원), (166만원 + 160만원), 200만원} = **200 만원**
    - \*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추가공제 한도 200만원 적용

## 4. 자녀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 자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 자녀 및 손자녀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자녀의 수		세 액 공 제 금 액
1명	$\Rightarrow$	연 15만 원
2명	-	연 30만 원
3명 이상	$\Rightarrow$	연 30만 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
	-	* 3명 : 60만 원, 4명 : 90만 원, 5명 : 120만 원

□ 출산·입양 공제대상 자녀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 자녀장려금은 자녀 세액공제(기본공제, 출산·입양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사례 1** 3자녀(22세, 10세, 3세)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 공제금액은?

-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 공제대상 자녀 중 **8세 이상 자녀의 수가 1명인** 경우 연 15만 원을 공제합니다.
- □ 위 근로자의 **자녀세액 공제금액은 15만 원입니다**. \* 22세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 아님

**사례 2** 4자녀(5세, 8세, 10세, 13세)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 공제금액은?

-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8세 이상이 3명이므로.
- ☞ 위 근로자의 자녀세액 공제금액은 60만 원 입니다.

사례 3 1자녀(5세)가 있는 사람이 2023년도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 공제금액은 얼마인가요?

◇ 8세 이상인 기본공제대상 자녀는 없으나 둘째 자녀가 **출산 공제대상**이므로 ☞ 위 근로자의 **자녀세액 공제금액**은 **50만 원** 입니다.

## 5. 연금계좌 세액공제

-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①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 ②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 <총급여액별 공제비율>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퇴직연금 합산시 한도)	공제율
55백만원 이하 (45백만원 이하)	600만원 (900만원)	15%
55백만원 초과 (45백만원 초과)		12%

-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 아래의 연금계좌에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합계액을 **연 9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세액공제 적용(연금저축계좌 납입액 한도는 연 600만원)
- 연금저축계좌 :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 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 퇴직연금계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 연금제도(DC형)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중소기업퇴직 연금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제외)

## 사례 1 연금계좌 세액공제 금액은? (총급여 5천 5백만 원 이하)

(단위 : 만원)

상 황	연금저축납입액 (600만 원 한도)	퇴직연금 납입액	공제금액 (900만 원 한도)	공제비율	세액공제액
1	0	700	700	15%	105
2	200	500	700	15%	105
3	500	200	700	15%	105
4	700	0	600	15%	90

## 사례 2 연금계좌 세액공제 금액은? (총급여 5천 5백만 원 초과)

(단위 : 만원)

상 황	연금저축납입액 (600만 원 한도)	퇴직연금 납입액	공제금액 (900만 원 한도)	공제비율	세액공제액
1	0	700	700	12%	84
2	200	500	700	12%	84
3	600	350	900	12%	108
4	700	0	600	12%	72

## 6. 특별 세액공제

- 1 보험료 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구 분	징	제	항	목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보장성보험	생명보험 보장성보	,		등의	연 100만 원	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장애인을 수익자를 보장성	로 하는	- 장애인		연 100만 원	15%

#### 사례 1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가 계약자인 자동차종합보험 (피보험자 본인)의 보험료 납입영수증(보험료 110만 원)을 회사에 제출하였을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액은?

♦ 세액공제 대상금액 : 100만 원(한도 100만 원)

♦ 보험료 세액공제액 : 100만 원 × 12% = 12만 원

☞ 위 근로자의 보험료 세액공제액은 12만 원 입니다.

#### 사례 2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A에 대한 보장성보험료 납입액 120만 원과 자녀 B(장애인)의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납입액이 200만 원인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액은?

- ◇ 세액공제 대상금액 : 200만 원 = 100만 원 (일반보장성보험) + 100만 원(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 ♦ 보험료 세액공제액 :(100만 원 × 12%) + (100만 원 × 15%) = 27만 원
- ☞ 위 근로자의 **보험료 세액공제액은 27만 원** 입니다.

## 2 의료비 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구 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연 700만 원 한도	15%
본인·65세이상·장애인 의료비	한도 없음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한도 없음	20%
난임시술비	한도 없음	30%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 사례 1

총급여 6천만 원인 근로자가 ①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하여 의료비 110만 원, ② 미숙아 자녀를 위하여 의료비 200만 원을 지급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

- ◇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15%(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
- ◇ 총급여액의 3% 해당금액 : 180만 원(총급여액의 3% = 6천만 원 × 3%)
-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 130만 원 (310만원 180만원)
   의료비 총 사용액 : 310만원 (미숙아 2백만원+ 부양가족 110만원)
   공제불가 금액 = 총급여의 3% = 180만원(부양가족 110만원 + 미숙아 70만원)
-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금액은 130만원입니다.

#### 사례 2

총급여 4천만 원 근로자가 본인 등 의료비 1천만 원, 일반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 100만 원일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 ♦ 총급여액의 3% 해당금액 : 120만 원(총급여액의 3% = 4천만 원 × 3%)
- ◇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공제 대상 : 100만 원 120만 원 = △ 20 만원
- ♦ 본인 등 의료비 공제 대상 : 980만 원(1천만 원 20만 원)
- ♦ 의료비 세액공제액 : 147만 원(980만 원 × 15%)
- ☞ 위 근로자의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 147만 원** 입니다.

#### 사례 3

총급여 4천만 원 근로자가 본인 등 의료비 1천만 원, 일반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 100만 원일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당해연도 실손의료보험금 2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하므로,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1,100만 원)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200만 원)을 차감하여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 ◇ 실손보험금 수령액 차감 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 900만 원(본인 등 의료비)
- ◇ 총급여액의 3% 해당금액 : 120만 원(총급여액 4천만 원 × 3%)
- ♦ 본인 등 의료비 공제 대상 : 780만 원(900만 원 120만 원)
- ♦ 의료비 세액공제액: 117만 원(780만 원 × 15%)
- ☞ 위 근로자의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 117만 원** 입니다.

#### 사례 4

총급여액 5천만 원 근로자가 배우자를 위해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3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

- ◆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15%(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
- ◇ 일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7백만 원까지만 지출액으로 인정합니다.
- ◇ 총급여액의 3% = 50,000,000 × 3% = 1,500,000원
- ◇ 공제대상 의료비 = 2,000,000원 (산후조리원 비용은 2백만 원 한도)
- ◇ 세액공제 대상금액 = 2,000,000원 1,500,000원 = 500,000원
- ☞ 위 근로자의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 500.000원 × 15% = **75.000원**입니다.

#### 사례 6

총급여액 6천만 원 근로자가 배우자를 위해 난임시술비 400만원,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250만 원을 지출하고, 병원 치료비로 350만 원을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

- ◇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15%(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
- ◇ 일반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7백만 원까지만 지출액으로 인정합니다.
- ♦ 총급여액의 3% = 60,000,000 × 3% = 1,800,000원
- ◇ 공제대상 의료비 =

난임시술비 4.000.000원 (전액 공제대상)

산후조리원 비용 2,000,000원 (산후조리원 비용은 2백만 원 한도)

기타 의료비 3,500,000원 합계 9.500.000원

- ♦ 세액공제 대상금액 = 4,000,000원 + [(2,000,000+3,500,000) 1,800,000] = 7,700,000원
  - ☞ 위 근로자의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 1.755.000원**입니다.
    - \* 난임시술비 4백만원 × 30% + 일반 의료비(산후조리원 포함) 370만원 × 15% = 1.755,000

#### 사례 7

총급여액 8천만 원 근로자가 배우자를 위해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200만 원을 지출하고, 병원 치료비로 3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의료비세액공제금액은?

- ◇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15%(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
- ◇ 일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7백만 원까지만 지출액으로 인정합니다.
- ♦ 총급여액의 3% = 80,000,000 × 3% = 2,400,000원
- ◇ 공제대상 의료비 =

산후조리원 비용 0원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의료비로 인정받습니다.)

기타 의료비 3,000,000원 합계 3,000,000원

♦ 세액공제 대상금액 = 3,000,000원 - 2,400,000원 = 600,000원

☞ 위 근로자의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 600,000원 × 15% = **90,000원**입니다.

## ③ 교육비 세액공제

○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구 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근로자 본인	전 액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받지 않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 자매 및 입양자 ※ 직계존속은 제외	<ol> <li>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 학생 ⇒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li> <li>대학생 ⇒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li> <li>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li> </ol>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포함)	전 액

## 사례 1 근로자가 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형제자매(소득 없음)를 위해 아래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연도 교육비 세액공제금액은?

구	분	내용	금 액	
본	인	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800만 원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1명)	보육료 150만 원	
자	녀	초등학생(1명)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 120만 원	
		중학생(1명)	중학교 수업료 300만 원	
<del></del> 1 +11	+1	대학원생(처남, 26세)	1,000만 원	
	데자매 3명)	내 학생(저 남 22세)		900만 원
	o,	대학생(동생, 25세)	750만 원	

-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①+②+③) = 800만 원 + 450만 원 + 1,650만 원 = 2,900만 원
  - ① 본인교육비: 800만 원
  - ② 자녀 교육비: 450만 원(150만 원+300만 원)
  - \* 취학전 자녀의 영유아 보육료 150만 원은 공제 대상이나, 초등학생의 학원·체육 시설 수강료는 공제 대상이 아님
  - ③ 형제자매 교육비: 1,650만 원
    - \* 대학생 처남(공제한도 900만 원), 동생 750만 원 공제가능하나 대학원생 처남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님
- ☞ 위 근로자의 교육비 세액공제금액은 4.350,000원입니다.
  - \* 교육비 세액공제금액 = 2,900만 원 × 15% = 435만 원

## 4 기부금 세액공제

-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 기부금액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star$  '21년  $\sim$  '22년 기부분은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5%p 상향 적용

### < 세액공제 대상과 공제율 >

구	분	공 제 항 목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공제율	
정치자금	금 기부금	정당기부 등	근로소득금액 전액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3천만원 초과 (25%)	
고향사랑 기부금		지방자치단체 등	500만원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특례기부금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근로소득금액 전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30%	특례+우리시주 +일반 1천만원 이하	
일 반 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된 사회·복지· 문화·예술단체	근로소득금액의 30%	15% 1천만원 초과 30%	
	종교단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근로소득금액의 10%		

- \*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은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 \*\*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 불가능

#### 사례 1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20만 원을 기부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은?

- ◇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10만 원까지는 100/110을, 10만 원 초과분은 15%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
- ♦ 10만 원 이하 = 10만 원 × 100/110 = 90.909원
- ♦ 10만 원 초과 = 10만 원 × 15% = 15.000원
-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액 = 90.909원 + 15.000원 = 105.909원
- ☞ 위 근로자의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은 105,909원**입니다.

#### 사례 2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방헌금으로 400만 원, 대학교기부금으로 900만 원, 종친회에 300만원을 기부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은?

- ◇ 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는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
- ♦ 특례기부금(국방헌금) 세액공제 = 400만 원 × 15% = 60만 원
- ◇ 일반기부금(대학교) 세액공제 = (600만 원 × 15%) + (300만 원 × 30%) = 180만 원
- ♦ 기부금 세액공제액 = 60만원 + 180만원 = 240만 원
  - \* 종친회에 기부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 아님
- ☞ 위 근로자의 **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은 240만 원**입니다.

#### 사례 3

총급여액 4천만 원(근로소득금액 2,875만 원)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일반기부금(평생교육시설 기부금)으로 900만 원을 기부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금액 및 이월액은?

- ◇ 기부금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특례·일반기부금(2013년 이후)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 하여 공제합니다.
- ♦ 일반기부금 공제대상금액 한도 = 862.5만 원(근로소득금액 2,875만 원 × 30%)
- ♦ 일반기부금 세액공제 = 862.5만 원 × 15% = 1,293,750원
- ♦ 기부금 이월액 = 9백만 원 862.5만 원 = 375,000원
- 의 인보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은 1,293,750원이며,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일반기부금 이월액은 375,000원입니다.

## 7. 월세액 세액공제

-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 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 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공제율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 제외) : 15%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자 제외) : 17%

#### 사례 1

총급여 8천만 원 근로자가 기준시가 2억 원인 아파트를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 연 700만 원일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금액은?

- ◇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 ☞ 위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금액은 없습니다**.

#### 사례 2

총급여 6천만 원 근로자가 주거용 오피스텔(기준시가 2억 원)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 연 800만 원일 경우 월세액 세액 공제금액은?(주택 소유 요건 등은 충족한 것으로 가정)

- ◇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을 포함하며, 연간 월세액 한도액 750만 원 한도로 15%(총급여 5,500만 원 초과에서 7천만 원 이하자) 세액 공제
- ◇ 공제대상 월세액 : 750만 원
- ♦ 월세액 세액공제액: 1.125.000 원(750만원 × 15%)
- ☞ 위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금액은 1,125,000 원** 입니다.

#### 사례 3

총급여 4천만 원 근로자가 주거용 오피스텔(기준시가 2억 원)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 연 800만 원일 경우 월세액 세액 공제금액은?(주택 소유 요건 등은 충족한 것으로 가정)

- ◇ 연간 월세액 한도액 750만 원 한도로 17%(총급여 5천 5백만 원 이하자) 세액 공제
- ◇ 공제대상 월세액 : 750만 원
- ♦ 월세액 세액공제액 : 1,275,000원 (750만 원 × 17%)
- ☞ 위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금액은 1,275,000 원** 입니다.